



국 방 부

동맹국 방
과학기술 강국

수 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부처 및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예비군법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
나. 병역법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
3.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보장을 위한 귀 부처 및 대학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 다만, 지속적인 안내에도 '23년 일부 대학에서 훈련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, 다시 한번 구성원들께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가.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,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예비군법>

-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: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
- 제15조(벌칙) 제8항 :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병역법>

-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: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(이하 "병력동원소집등"이라 한다)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

1.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, 병력동원훈련소집,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
2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(이하 "예비군대체복무"라 한다) 소집

- 제93조의2 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) : **학교의 장**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**불리한 처우**를 한 경우에는 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나. 그러나 '22~'23년 예비군훈련 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**결석으로 처리**하는 사례, 성적 및 장학금 산정 간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것을 이유로 **감점 처리**하는 사례,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**퀴즈 (수시시험) 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**하는 사례,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**강의자료 제공**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.

다.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**국방의무**를 이행하는 **예비군(학생)**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**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**를 받지 않도록 **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**를 당부드리며, **담당 교수, 관계자분들**에게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**해당 학교의 훈련일정, 관련 법률** 등을 붙임의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'23년 예비군훈련 : 3월 2일~ 12월 20일

붙임 :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. 끝.

국 방 부 장 관



수신자 교육부장관, 전국 대학교(총무부서), 병무청(동원관리관), 각 군

총령 **강원석** 예비전력과장 **배용인** 동원기획관 09/04 **염주성**

협조자

시행 예비전력과-4073 (2023.09.04.) 접수 학사과-10478 (2023.09.05.)

우 0435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별관809호 / <http://www.mnd.go.kr>

전화 군) 900-5245, /전송 02-0000-0000 / a03-10028@mnd.mil / 공개
일) 02-748-5245